

[붙임1]

『2010년 방송평가』 실시 개요

1. 실시 목적

- 방송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및 방송의 공적 책임 확보

2. 근거 법규

- 방송법 제31조 및 동법 제17조제3항제1호,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

3. 기본방향

- 내용영역, 편성영역, 운영영역 등에 관한 종합평가 실시
- 방송평가 결과를 해당 사업자의 재허가 및 재승인 심사에 반영

4. 대상 기간 : 2009. 1. 1. ~ 12. 31

5. 대상 사업자

- 허가·승인 대상인 지상파방송사업자, 종합유선방송사업자, 위성방송사업자 및 보도·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자(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)
- 총 153개 사업자 340채널에 대한 방송평가 실시

	지상파			SO	위성		PP		합 계
	TV	R	DMB		일반	DMB	보도	홈쇼핑	
사업자 수 (채널수)	48개 (TV 63개, R 153개, DMB 19개)			96개	1개	1개	2개	5개	153개 (340개)

6. 평가 개요

○ (평가기준) 「방송평가에 관한 규칙」 및 「평가척도 세부기준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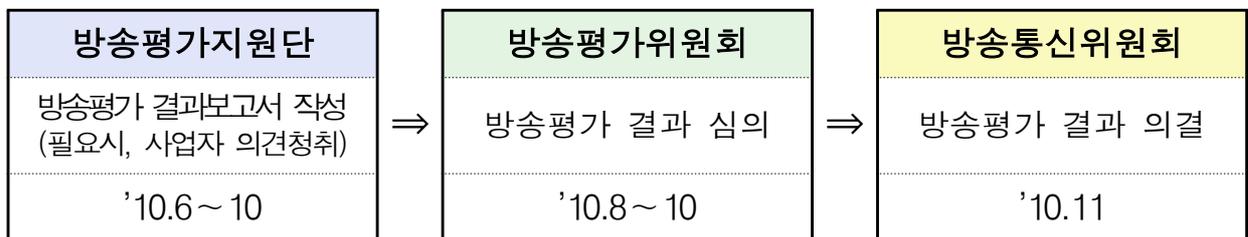
- 각 항목의 평가결과를 점수화하는 정량적 평가를 실시

※ 「방송평가에 관한 규칙」은 매체별·영역별 평가항목, 평가척도 및 전체 배점 등을 규정하고, 「평가척도 세부기준」은 세부 평가방법 및 배점 기준표 등을 규정

○ (평가영역) 내용, 편성, 운영 영역으로 나누어 종합 평가

- 내용영역 : 방송프로그램의 품질, 자체심의 운영실적, 방송심의 관련 제규정 준수 등을 평가
- 편성영역 : 법정 편성비율 준수여부, 어린이·장애인 프로그램·재난방송 등에 대한 편성의 적절성을 평가
- 운영영역 : 경영적정성, 재무건전성, 인적자원·기술에 대한 투자, 방송법 등 관계법령 준수 여부 등을 평가

○ (평가절차) 방송사업자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평가 실무를 담당하는 방송평가지원단에서 평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, 이를 방송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



7. 결과 공표

○ 위원회 홈페이지에 2010년도 방송평가 결과 게시